독서(사회) 형사 소송법

[01-0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 체계인 형사 소송법은,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으로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형사 소송은 일반적으로는 공소 제기 이전 단계인 수사 절차와 재판 확정 이후 단계인 형 집행 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형사 소송법이라고 할 때는 1954년에 공포·시행된 단행 법률만을 의미하지 않고, 「소년법」,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실질적으로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을 포함하는 의미로 통칭된다. 이처럼 형사 소송법은 형사 소송의 실질적 절차에 대한 법인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추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2 형사 소송 절차가 어떠한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를 소송 구조론이라 한다. 과거에는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고 심리·재판해야 한다는 규문주의와, 재판 기관과 소추 기관을 분리하여 소추 기관의 공소 제기에 의하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탄핵주의의 대립이 있었다. ㉠규문주의 소송 구조는 형사 절차의 모든 권한이 법원에 집중되어 있어, 법원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범죄 혐의자가 조사·심리의 객체일 뿐 방어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규문주의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탄핵주의 소송 구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오늘날 소송 구조에 대한 논의는 ㉡탄핵주의 소송 구조에 기반을 ⓑ두고, 법원·검사·피고인 간의 기능 분담과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사자주의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이를 기초로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소송 구조이고,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갖고 직권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소송 구조이다. 1954년 제정된 형사 소송법은 직권주의적 제도를 기본 구조를 삼고 있었으나, 현행 형사 소송법은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하여 양 제도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A] 3 공소가 제기되면 소송의 주체인 법원, 검사, 피고인이 각각 재판권의 주체, 공소권의 주체, 방어권의 주체로서 각자의 소송법적 권한에 따라 소송을 성립·발전시켜 가게 된다.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라고 하며, 사법 경찰 관리를 검사의 보조자, 변호인을 피고인의 보조자라고 한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와 보조자를 합하여 소송 관계인이라고 한다. 소송 당사자 중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고, 증거로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증명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나 1 형사 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증거 재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심증• 형성 과정의 엄격성을 강조하고 있다. 증거 재판주의에 따라 증명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를 '엄격한 증명'이라 한다. 이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엄격한 증명 이외의 방법에 의한 증명, 즉 증거 능력이나 법률이 정한 증거 조사 방식에 구애되지 않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증명을 '자유로운 증명'이라 한다. 유죄의 인정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은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위법성, 책임 등 형벌권의 유무에 대한 사실과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 사유와 같은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 대상이 되고, 피고인의 경력, 성격 등의 정황에 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증명 방법에 의해 사실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를 '거증 책임의 분배'라 하는데,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거증 책임을 부담한다.

2 증거 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없는 증거는 증거 조사의 대상이나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의 인정 자료가 될 수 없다. 증거 능력 여부는 적법 절차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전문 증거 배제 법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정해진다.

3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는 것으로 수사 기관의 위법 수사를 억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자백 배제 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의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자백 배제 법칙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된 자백은 소송 당사자의 증거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은 법원에 간접적으로 보고된 것을 증거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전문 증거란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 또는 서면 기재 등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증거로 삼을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 증거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소송 관계인에게 증거 동의권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소추**: 형사 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 **심증**: 재판상의 용어로서, 법관이 증거를 조사한 결과로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가 판단하여 품게 되는 확신을 말함.

1 | 주제 통합적 읽기 전략의 파악 |

(가), (나)를 관련 지어 읽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를 읽으며 형사 소송 절차가 어떠한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궁금한 경우, (나)에서 증거 능력의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한다.

② (가)를 읽으며 법원, 검사, 피고인의 소송법적 권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궁금한 경우, (나)에서 소송 관계인에게 부여한 증거 동의권에 관한 내용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한다.

③ (가)를 읽으며 형사 소송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법률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한 경우, (나)에서 형사 소송법의 기본 원칙인 증거 재판주의에 관한 내용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한다.

④ (가)를 읽으며 형사 소송법에서 어떤 이유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경우, (나)에서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한다.

⑤ (가)를 읽으며 형사 소송법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지가 궁금한 경우, (나)에서 형사 소송법의 증거 관련 원칙에 관한 내용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한다.

2 **(가),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형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수사 절차와 형 집행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② 1954년에 제정된 형사 소송법에 비해 현행 형사 소송법은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③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기로 동의하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자백과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을 갖추게 된다.

④ 형사 소송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된 정보는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일반적으로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엄격한 증명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정황에 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 추론의 적절성 평가 |

3 (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 재판이었더라면 입증 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1996.3.8. 95도3081.)

①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형사 소송법에서 증거 재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② 법관으로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는 것은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심증 형성 과정의 엄격성을 강조한 것이겠군.
③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증 책임의 분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겠군.
④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추구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밝힌 것이겠군.
⑤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원칙이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 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겠군.

| 정보 간의 관계 파악 |

4 (가)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서는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원칙이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
② ㉡은 소송 과정에서 수행하는 법원, 검사, 피고인의 역할에 따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③ ㉠과 달리 ㉡에서는 법원이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갖고 직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④ ㉡과 달리 ㉠에서는 법원이 스스로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⑤ ㉠과 ㉡의 관계를 통해 형사 소송 절차가 이루어지는 구조에 대한 대립적 입장을 발견할 수 있다.

5 [A]를 참고하여 ㉮의 이유를 추리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송 관계인이 소송 당사자와 보조자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③ 법원, 검사, 피고인이 지니고 있는 소송법적 권한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④ 검사의 보조자는 사법 경찰 관리이지만 피고인의 보조자는 변호인이기 때문이다.
⑤ 검사가 재판권의 주체인 법원과 달리 공소권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 |

6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① ⓐ: 그녀는 자주 딸을 친구 삼아 이야기하고는 한다.
② ⓑ: 그 사건은 두었다가 나중에 처리합시다.
③ ⓒ: 교차로를 건널 때는 신호등을 잘 보고 건너야 한다.
④ ⓓ: 이번 봉사 활동은 학급 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⑤ ⓔ: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떡은 쌀로 만든 것보다 맛이 못하다.

독서(사회) 형사 소송법 정답 및 해설

1. ⑤ 2. ③ 3. ④ 4. ③ 5. ② 6. ④

1. (가)의 1에서 형사 소송법의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형사 소송법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나)에서 찾을 수 있다. (나)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증거 재판주의와 관련하여 증거 관련 여러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형사 소송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거해 진실을 가린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가)의 2에서 형사 소송 절차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2에 제시되어 있는 증거 능력의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은 형사 소송 절차의 바람직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② (가)의 3에서 법원, 검사, 피고인이 각각 재판권의 주체, 공소권의 주체, 방어권의 주체로서 소송법적 권한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3에 제시되어 있는 증거 동의권에 관한 내용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③ (가)의 1에서 형사 소송법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미 소개하고 있으므로, 궁금한 내용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나)의 증거 재판주의에 관한 내용은 형사 소송법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들을 알려 주지 않는다.

④ (가)의 1에서 형사 소송법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형사 소송법에서 어떤 이유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1에서는 증거 능력, 법률에 의한 증거 조사를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 능력, 법률에 의한 증거 조사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통해 형사 소송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알 수가 없다.

2. (나)의 3에서 자백 배제 법칙과 관련하여 증거 능력이 부정된 자백은 소송 당사자의 증거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기로 동의하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자백이 증거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전문 증거는 증거에서 배제되는 것인데, 소송 당사자가 증거로 삼을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증거로 사용된다.

오답 분석

① (가)의 1에서 형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수사 절차와 형 집행 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2에서 1954년 제정된 형사 소송법은 직권주의적 제도를 기본 구조를 삼고 있었으나, 현행 형사 소송법은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하여 양 제도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1에서 증명이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엄격한 증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2에서 증거 능력이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하고 있고, (나)의 3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들 정보를 종합하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된 정보는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1에서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엄격한 증명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정황상에 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보기〉의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증거여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는 (나)의 1에서 제시한 심증 형성 과정의 엄격성을 강조한 것으로 엄격한 증명에 관한 것이다. 이를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의 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증거 재판주의를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1에서 형사 소송법이 증거 재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② 법관으로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은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게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나)의 1에 언급된 심증 형성 과정의 엄격성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의 3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증명의 원칙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1에서는 거증 책임의 분배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의 증명이 불가능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검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증 책임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3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원칙이 달리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불이익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가)의 2에서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고 심리·재판해야 한다는 것이 규문주의의 입장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법원이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갖고 직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규문주의 소송 구조에 관한 것이다.

오답 분석

① ㉠에서는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② 탄핵주의는 재판 기관과 소추 기관을 분리하여 소추 기관의 공소 제기에 의하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소송 구조에 대한 논의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법원, 검사, 피고인의 역할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사자주의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소송 구조이고,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갖고 직권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 구조이다.

④ ㉠에서는 법원이 스스로 소송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에서는 재판 기관과 소추 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⑤ ㉠, ㉡은 재판 기관과 소추 기관을 분리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은 법원이 소추까지 가능한 구조인 반면, ㉡은 소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형사 소송 절차가 이루어지는 구조와 관련하여, ㉠은 법원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 주며, ㉡은 법원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나)의 1에서는 사실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인 '거증 책임의 분배'가 발생하는데, 검사가 원칙적으로 거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의 입증이 안 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A]에 따르면, 이렇게 피고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은 피고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오답 분석

① [A]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소송 당사자이며, 검사는 사법 경찰 관리를, 피고인은 변호인을 보조자로 둘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검사가 거증 부담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 [A]에서 법원, 검사, 피고인이 각각 재판권, 공소권, 방어권의 주체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소송법적 권한이 다르더라도 피고인에게 거증 책임을 지울 수도 있는 것이다. 소송법적 권한이 다른 것은 검사에게 거증 책임을 지우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④ 검사와 피고인의 보조자가 구별되는 것은 검사에게 거증 책임을 지우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공소를 제기하는 것과 거증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6. ⓓ는 문맥적으로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봉사 활동은 학급 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의 '따라'도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는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①에서는 '무엇을 무엇으로 가정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② ⓑ는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②에서는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③ ⓒ는 '대상을 평가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③에서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⑤ ⓔ는 '지위를 지니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⑤에서는 '앞에 오는 말이 수단이나 방법이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